

예산총칙

2013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05,821,853	12,174,656
일반회계	330,360,567	9,910,817
특별회계	75,461,286	2,263,839
공기업특별회계	24,745,590	742,368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24,745,590	742,368
기타특별회계	50,715,696	1,521,471
의료급여기금운영	1,616,548	48,496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1,192,655	35,780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290,469	8,714
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	10,257,723	307,732
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	21,034,196	631,026
농공지구조성사업	364,873	10,946
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	15,950,513	478,515
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	8,719	26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과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509,421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 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 예산 및 명시이월로 간주 처리한다.